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7. 16.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 장규권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함

2. 등록단체 현황

(단위 : 천원)

1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대표자	정재동	
		구성의원	정재동, 고성미, 김용술, 도병두, 엄셋별, 이인식	
		설립목적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업종별, 지역별, 배후입지 환경 등 금천형 특성화 지원 정책을 제시하여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돕는 등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주제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24. 7. ~ 2024. 12.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상점가별 상권 현황 및 실태조사 · 국내·외 우수한 전통시장 성공사례 비교 연구 및 방안 도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정책 지원 등 활성화 방안 제시 	
		소요예산	25,000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3,000	

2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회	대표자	장규권	
		구성의원	장규권, 고영찬, 운영희, 정순기	
		설립목적	금천구 1인가구의 비중은 전국 및 서울시보다 높은 특성을 보임. 특히 직주근접을 위해 금천구에 거주하는 20대~30대 1인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금천구의 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가 금천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주제	금천구 1인가구의 정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4. 7. ~ 2024. 12.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일반 현황 분석 · 금천구 지역 특성 분석 · 1인가구 정책 및 실태 분석 · 금천구 1인가구의 지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소요예산	31,000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3,000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2. 설립목적 :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업종별, 지역별, 배후입지 환경 등 시장별 상황에 따른 특성화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돕는 등 지역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주제 :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4. 단체 인적사항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1	행정재경위원회	정 재 동		대표자
2	행정재경위원회	고 성 미		
3	복지건설위원회	김 용 술		
4	복지건설위원회	도 병 두		
5	복지건설위원회	엄 셋 별		
6	의장	이 인 식		

2024년 7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정 재 동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연구내용		주제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적	전통시장 상인과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업종별, 지역별, 배후입지 환경 등 금천형 특성화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돕는 등 지역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활동비	총액	금삼백만원(₩3,000,000)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기타		정책개발비 금이천만원(₩2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24년 7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정재동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1. 연구단체명 :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회
- 2. 설립목적 : 금천구의 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가 금천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4. 단체 인적사항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1	복지건설위원회	장규권		대표자
2	복지건설위원회	고영찬		
3	행정재경위원회	윤영희		
4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2024년 7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장규권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회
연구내용		주 제 금천구 1인가구의 정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목 적 금천구 1인가구의 비중은 전국 및 서울시보다 높은 특성을 보임. 특히 직주근접을 위해 금천구에 거주하는 20대~30대 1인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금천구의 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가 금천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연구활동비	총 액	금삼백만원(₩3,000,000)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문경비 등
기 타		정책개발비 금이천팔백만원(₩2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24년 7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장 규 권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등록)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제5조의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심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배분·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맡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제1252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87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